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62

발의연월일: 2020. 9. 18.

발 의 자: 박상혁·김윤덕·김정호

허 영・송옥주・윤후덕

최인호 · 서삼석 · 이정문

이원욱 • 서영석 • 김승원

임종성 · 진성준 · 한병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 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3조제1항제5호 중 "화물운송"을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으로 한다.

제68조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을 교부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	
전업무 종사자격) ①・② (생	전업무 종사자격)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은 다	
	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	
	서도 아니 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	
	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u>3.·4.</u> (생 략)	<u>4.·5.</u>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	
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	소) ①	
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5 호 · 제6호 · 제7호 ·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6. ~ 10. (생략)
- ②·③ (생 략)

제68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 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	

- 1. ~ 4. (현행과 같음)
-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 운송-----
 - 6. ~ 10.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 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주거 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 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